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11년 10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최우석 정보통신산업과장(2110-4810), 오재철 사무관(2110-4811)	

2012년 1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하여 **2011년 10월 21일(금)에 고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이나, 그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였음**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 예시>

◇ **35 요금제 + A사 스마트폰 구매 10,000여명 조사('11.6월)**

①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

- **매장** : 대리점(평균 43.8만원)과 온라인 채널(평균 14.2만원)간 **29.6만원 차이**
- **소비자** : 평균구매가(36.9만원)와 최고구매가(64.2만원)간 **27.3만원 차이 발생**

②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

- 휴대폰 가격을 343,200원으로 책정시, 35요금제 요금할인(월 14,300 × 24개월 = 343,200원)으로 마치 휴대폰이 공짜인 것처럼 마케팅

 * 실제 고객 영수증 : 월 통신비(20,700원) + 휴대폰 할부(14,300원)

□ 금번에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근거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

② **(대상품목)**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③ **(표시대상점포)**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 적용**

*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 등



④ (표시내용)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 모두 표시

*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판매중이며,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단말할인폭이 상이함에 따라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토록 함



⑤ 부당한 행위 금지

○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 부당한 가격표시 사례 : 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 공짜
* 실제 35요금제에서 소비자 부담액은 통신비 + 휴대폰 할부금으로 구성

○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 현행 마켓팅 사례 :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9,700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⑥ (경과규정)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하여**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붙임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 고시 전문

붙임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 고시 전문**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폰"이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를 비롯하여, 태블릿컴퓨터 및 기타 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모든 휴대용 단말장치(액세서리 등 부속상품을 포함한다)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휴대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가격"이란 표시의무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의 실제 가격으로서 통신요금 및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과는 분리 계산하여 별도로 표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자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제조업자"란 휴대폰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출고가격"이란 공급가격, 공장도 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대폰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표시의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을 총칭하여 말한다.

7. "판매장려금"이란 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휴대폰 판매에 상응하여 표시의무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표시의무대상점포)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매장크기와 관계없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및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중고상품 소매업)에 속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직영 또는 전속 대리점, 일반 판매점, 대규모점포 내의 휴대폰 판매점, 제조업자 전문매장 등을 포함한다.

2.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점포 소매업에 속하면서 온라인 휴대폰 판매 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표시의무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제4조(판매가격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에 관해 실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가입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별로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상이할 경우, 표시의무자는 개별 휴대폰별로 상이한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휴대폰일지라도 신규 가입시와 기기 변경시의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 표시의무자는 상이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의무자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휴대폰에 표시하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표시의무자는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가격 표시를 즉시 변경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⑥ 휴대폰 판매가격 표시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5조(부당한 행위의 금지) 표시의무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통신서비스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

3.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4.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제6조(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시의무자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속대리점을 비롯한 제3조제1항의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표시의무자를 위한 판매가격 표시방법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정기 또는 수시로 표시의무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판매가격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판매장려금의 적정화) ① 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판매장려금 축소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휴대폰의 출고가격 인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77조에 의해 표시의무자·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자·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시의무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자

2. 제5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한 자

3.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1조(보고) 시·도지사는 연간 지도·점검 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사항)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휴대폰 판매가격 표시방법(예시)

□ 스마트폰 일반 약정 및 요금제 약정 표시방법(예시)

일반 약정 판매가격	
	₩ 원
요금제 약정 판매가격	
A요금	₩ 원
B요금	₩ 원
C요금	₩ 원
D요금	₩ 원
E요금	₩ 원
F요금	₩ 원

□ 피처폰 일반 약정 및 요금제 약정 표시방법(예시)

일반 약정 판매가격
₩ 원
요금제 약정 판매가격
₩ 원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표시 의무자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20	30	100	300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대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 (제5조제1호 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 (제5조제2호 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5조제3호 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휴대폰의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제5조제4호 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표시 의무자 및 전기통신 사업자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표시 의무자 · 제조업자 및 전기통신 사업자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 주)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